

예산총칙

제1조 EAC창원노인요양센터의 2026년도 예산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784,497,370원으로 한다.

제3조 1) 세입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 (관 또는 항 단위)

- (1) 보조금 : 107,400,000원
- (2) 입소자부담금(입소, 식비, 진료 및 약제비) : 807,801,402원
- (3) 장기요양사업금(가산금수입금 포함) : 2,731,185,968원
- (4) 후원금 : 0원
- (5) 전년도야월금 : 90,230,000원
- (6) 잡수입 : 47,880,000원

2) 세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 또는 항 단위)

- (1) 인건비 : 2,563,159,120원
- (2) 운영비 : 108,466,000원
- (3) 사업비 : 458,860,000원
- (4) 시설비 : 70,000,000원
- (5) 업무추진비 : 7,200,000원
- (6) 잡지출 : 9,600,000원
- (7) 예비비 및 기타 : 1,590,000원

3) 익년도 신설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2026년도 노인요양시설	3,676,507,370원
2026년도 보조금사업	107,990,000원
합계	3,784,497,370원

제4조 2026년도 명시 이월사업은 명시 이월사업비 명세서와 같다.

제5조 2026년도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 및 후원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따라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단, 동일 항내의 목간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또는 시설의 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제8조 기타 필요한 사항